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

귀하(귀 법인)가 납부할 지방세(체납액)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지방세(체납액)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납세자	성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영업소)				
압류재산의 표시					
압류일		년 월 일			
압류조서 작성일		년 월 일			
납기 전 보전 압류사유	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(단위: 원)					
세목	과세연도	납부기한	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		
			계	지방세	가산금

다만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. 끝.

발신명 외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